

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입법예고(7.22. ~ 8.10.)

- 재직자 체당금 신설, 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 등 반영 -

- 고용노동부(장관 이재갑)는 7월 22일(수), 재직자 체당금 신설, 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「임금채권보장법」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.
- 체당금 제도는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·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 등*에 대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이다.
 - *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,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중 미지급액(상한액 있음)
-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1월 발표한 「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」을 뒷받침하는 것으로, 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국회 임기 만료로 개정안이 폐기됨에 따라 21대 국회에서 재입법을 추진하게 되었다.

< 주요 개정내용 >

【재직자 체당금 신설】

- 현재 퇴직근로자에게 지원되는 소액체당금 제도를 가동 사업장의 재직근로자에게도 확대 적용하도록 하였다.
- 다만, 기금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저소득 근로자부터 우선 적용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적용대상을 확대*해나갈 예정이다.
 - * ①최저임금 120% 미만 & 중위소득 50% 미만('21년) → ②최저임금 120% 미만 & 중위소득 100% 미만('22년) → ③최저임금 120% 미만('23년)

【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】

- 현재는 소액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어야 하므로 신고일부터 실제 지급 시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었으나,
 - 법원 확정판결이 없어도 지방노동관서가 발급하는 '체불임금등·사업주 확인서'에 의해 소액체당금을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.
 - 이에 따라 소액체당금의 수령 소요 기간이 약 7개월에서 2개월로 크게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.

【도덕적 해이 및 부정수급 방지】

- 체당금 지급 후 사업주에게 구상하는 변제금 회수절차를 현행 민사절차에서 국세채납처분절차로 변경하여 신속하게 변제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.
- 또한,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체당금 부정수급시 추가징수금을 현재 체당금 지급액의 1배 이내에서 최대 5배까지로 상향하였다.
- 정부는 입법예고 절차 등을 거쳐 신속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,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.
- 입법예고안은 “고용노동부(www.moel.go.kr)” 또는 “대한민국 전자관보(www.gwanbo.mois.go.kr)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

이 보도자료에 대해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정장석 사무관(☎ 044-202-7563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1

현행 체당금 제도 개요

□ 사업목적

-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·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 체불임금 등을 지급

□ 체당금 지원 요건 및 지원 범위

| 구분 | 지원 요건 및 지원 범위 |
|--------|--|
| 일반 체당금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지급사유)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,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,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등사실인정 ○ (지급범위) 최종 3개월분의 임금·휴업수당,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체불액 ○ (상한액)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상한액이 다르며, 최대 2,100만 원('20.1.1.~) 가능 |
| 소액 체당금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지급사유)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확정된 증국판결 등 ○ (지급범위) 최종 3개월분의 임금·휴업수당,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체불액 ○ (상한액) 총 상한액은 1,000만 원이며, 「임금(휴업수당)」, 「퇴직급여등」을 구분하여 항목별 상한액을 각 700만 원으로 설정('19.7.1.~) |

□ 지원 절차

| 구분 | 절차 | | | |
|--------|--|---|---|---|
| 일반 체당금 |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">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 근로자 → 지방노동관서 </div> |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"> 확인신청 및 체당금 지급청구 근로자 → 지방노동관서 </div> |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"> 지급청구서 송부 지방노동관서 → 근로복지공단 </div> |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"> 체당금 지급 및 대위권 행사 근로복지공단 </div> |
| 소액 체당금 |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"> 임금청구소송 제기 근로자 → 법원 </div> |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"> 소액체당금 신청 근로자 → 근로복지공단 </div> |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"> 체당금 지급 요건 및 금액 확인 근로복지공단 </div> |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"> 체당금 지급 및 대위권 행사 근로복지공단 </div> |

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마감, 176만명 신청

- ‘집중 처리기간’ 운영으로 전체 신청 건의 50% 이상 처리·지급
- 8월 내 전체 신청 건에 대한 지급 완료에 최대한 노력

- 고용노동부(장관 이재갑)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또는 매출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(특고)·프리랜서, 영세 자영업자 등의 생계안정을 지원하는 “긴급 고용안정지원금” 신청을 7월 20일 마감한 결과, 잠정적으로 총 신청 건수가 176만 건을 넘어섰다고 밝혔다.
 - 이는 당초 예상했던 114만 명보다 약 62만 명 신청이 더 많이 접수된 것으로 목표 인원 대비 약 1.5배에 달하는 수치다.
 - 신청 건수 중에는 영세 자영업자가 110만건(62.4%)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, 특고·프리랜서와 무급휴직자는 각각 59만 건(33.5%), 7만건(4.1%)을 차지한다.
- 고용노동부는 신속한 지원금 지급을 위해 지난 3주간(6.29~7.20) 전 직원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업무를 하는 ‘집중 처리기간’을 운영하는 등 처리와 지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.
 - 이 결과, 지난달 다소 주춤하던 지급 속도는 이번 달에 상당히 개선되어 7.20일 기준 처리율은 51.6%, 지급율은 58.1%로 늘었다.

(‘20.7.20. 기준, 잠정)

| 신청건수(건) | 처리건수(건) | 지급액(천원)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1,763,555 | 910,693(51.6%) | 871,323,049(58.1%) |

- 고용노동부는 당초 예상보다 급격히 증가한 신청으로 인해 지원금 지급이 일부 지연되고 있으나, 8월말까지는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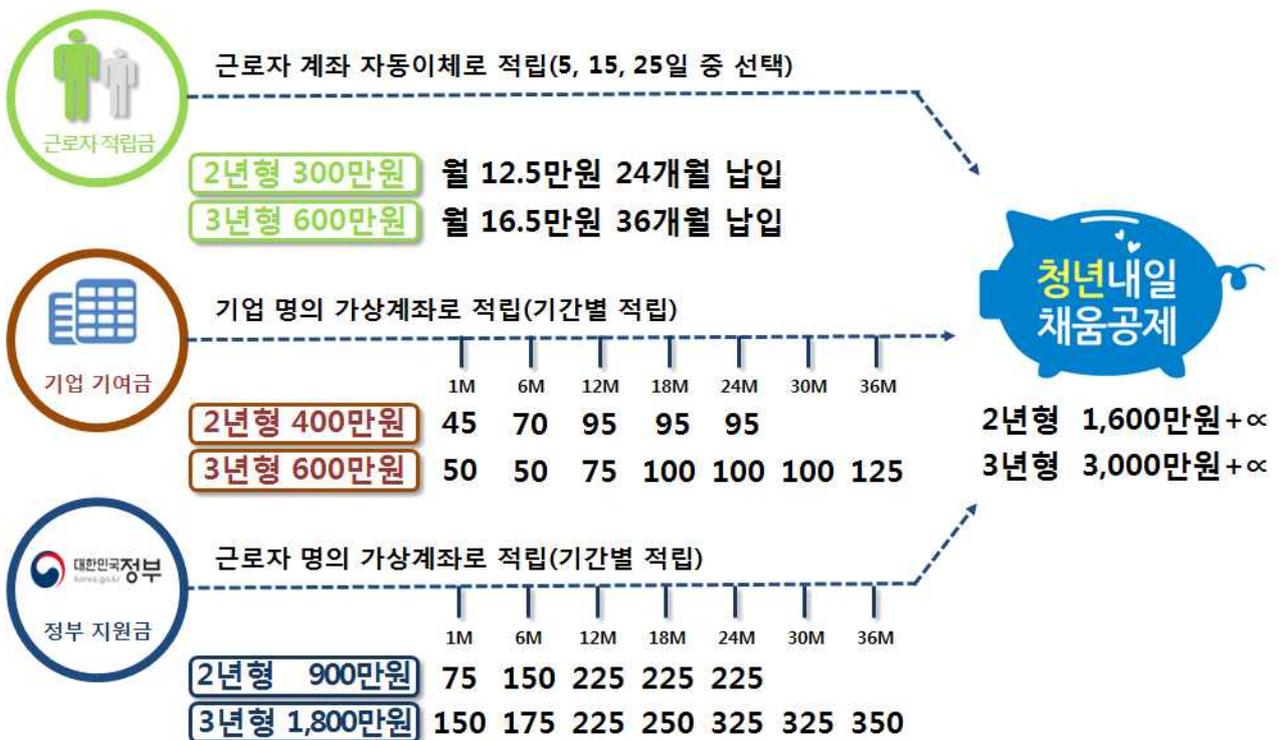
-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“코로나19로 인해 매출과 소득이 감소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프리랜서, 영세 자영업자, 무급 휴직자분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다시 한번 느꼈다”라며,
 - “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작은 도움이나마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지원금이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”고 밝혔다.

- 한편, 고용노동부는 예상보다 신청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집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가면서 차질없이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.

| | | |
|---|---|---|
|  공공누리 |  공공저각을 자유이용허락 | 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지원단 임세희 서기관(☎044-202-7314), 박경구 사무관(☎044-202-738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 |
|---|---|---|

2020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안내

- **[개요]**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촉진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자산형성 방식 지원모델인 「청년내일채움공제」 신설(16.7월)
 - 신규취업 청년의 일정기간 근속 및 납입을 전제로 정부와 기업이 보태어, 만기 시 일시금을 수령하는 일종의 '3자 공동적금'
- **[지원대상]** 중소·중견기업 정규직 취업 '청년' 및 '채용기업'
 - (청년) 만 15~34세 중소·중견기업 정규직 신규 취업자
 - * 생애최초 취업자 원칙이며, 예외적으로 '최종학교 졸업 후 고보 가입 총 12개월 이하' 가입 가능(3개월 이하 단기가입 기간은 기간산정 시 제외)
 - (기업)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·중견기업으로 상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(벤처기업,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5인 미만 가능)
- **[지원방식]** 가입기간 동안 청년·정부·기업의 3자 적립을 통해 자산형성



* 기업은 2년 450만원 또는 3년 670만원의 지원금 중 400만원 또는 600만원을 청년에게 기여

- **[중도해지]** 본인 납입분 전액 및 지원금 일부를 해지금으로 지급
 - (본인 납입분) 해지 시까지의 납입액 전액 **환급**(해지사유 무관, 2, 3년형 동일)
 - (기업 기여금) 해지 시까지 적립된 기업기여금 전액 **정부 환수**(“)
 - (정부 지원금) 해지 시까지 적립된 지원금의 일부를 청년에게 지급
(2년형은 50%, 3년형은 30% 수준)

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위탁운영기관 현황 [총 4개소]

| 운영기관명(대표전화) | 운영기관명(대표전화)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(주)커리어넷 서울북부지사(02-6925-5830) | 서울시북부여성발전센터(02-3399-7651) |
| 인크루트알바콜(주)서울북부지사(02-2186-9059) | (사)한국직업지도진흥원 노원지부(02-6959-5570) |

2020 기업지원제도 안내

1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종류

● 서울북부고용센터 서식자료실 → “사업주가 알아야 할 기업지원 등 주요 내용” 검색

| | | |
|---|------------|--|
| 1 | 고용창출장려금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(심사형, 요건형) ② 청년추가고용장려금 ③ 국내복귀 기업 지원(심사형) ④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(심사형) ⑤ 고용촉진장려금지원 |
| 2 | 고용안정장려금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정규직 전환지원(심사형), ② 워라벨일자리장려금 ③ 일·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(심사형), ④ 출산·육아기고용안정 장려금 지원 |
| 3 | 고용유지지원금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고용유지지원금, ② 무급 휴업·휴직고용유지지원금 |
| 4 | 장년고령자고용장려금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, ②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|

2 중복지원 사업 대상

| 양 장려금 | 중복 시 | 지원 비율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|
| 일자리 함께하기 (100% 지급) | 고용창출장려금 | + 70% 추가지원 |
| | 고용안정장려금 | + 100% 추가지원 |

3 문의처

○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 기업지원팀 (☎ 02-2171-1800~5)

○ 기업지원 사업별 주요 내용

|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| | 지원내용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고창 장려금 공출금 |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| (공모형) 교대제 개편, 실 근로시간 단축, 일자리 순환제 등을 도입하여 기존 근로자의 근로 시간을 줄임으로써 실업자를 신규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 [증가한 근로자 1인당] -인건비: 우선지원대상기업 월80만원, 중견기업 및 대규모기업 월 40만원, 1~2년 지원 -임금감소액보전: 월 최대 40만원 지원(사업주 보전임금의 80%한도) ·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주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 [증가한 근로자 1인당] -인건비: 증가 노동자 수 1인당 월 40~100만원, 1~2년 지원 -임금감소액보전: 월 최대40만원, 1~2년 지원(사업주 보전임금의 80%한도) |
| |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| · 청년(만15~34세 이하)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이상 중소, 중견기업(성장유망업종, 벤처기업 등은 5인미만도 가능) 사업주 [청년 추가채용 1인당] 연 최대 900만원, 3년지원 |
| | 국내 복귀 기업 지원 | ·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국내복귀기업으로 실업자를 신규 고용한 사업주 [증가한 근로자 1인당]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, 중견기업 월 30만원 |
| | 신중년적합 직무고용지원 | · 만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신규 고용한 사업주 [신규 고용한 근로자 1인당]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, 중견기업 월 40만원 |
| |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| ·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프로그램이수자, 중증장애인, 여성가장, 도서지역 거주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 [신규 고용한 근로자 1인당]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,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|
| | 고안 장려금 공정금 | 정규직 전환지원 |
| 위라벨일자리 장려금 | | · 전일제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할 때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도록 한 사업주 [전환된 근로자 1인당] 임금감소 보전금: 월 최대 40만원, 대체인력인건비: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, 대규모기업 월 30만원, 간접노무비: 우선지원대상기업·중견기업 월 20만원 |
| 일·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 | | · 시차출퇴근제, 선택근무제, 재택근무제, 원격근무제를 도입·확대하여 소속 근로자가 활용토록 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[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 1인당] 간접노무비: 1주당 5~10만원, 재택·원격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: 시스템 구축비의 1/2 이내, 2,000만원 한도(기업당) |
|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지원 | | · 육아휴직등 부여: 육아휴직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사업주 · 대체인력지원: 출산전후(유산사산)휴가, 육아휴직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 [해당 근로자 1인당] -대체인력인건비: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(인수인계기간 월 120만원),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-육아휴직등 부여 간접노무비: 육아휴직 월30만원(대규모기업 제외),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월30만원(대규모기업 10만원) |
| 고유 지원금 | 고용유지 지원금 | · 생산량 감소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사전에 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한 후 휴업·휴직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그 기간동안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수당 등을 지급하고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그 이후 1개월까지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은 사업주 * 지원사항 별도 문의 |
| | 무급 휴업·휴직 고용유지지원금 | ·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법에 따른 무급휴업·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무급휴업·휴직필요성, 근로자 복귀 가능성, 직업능력향상 계획 등을 심사하여 지원 대상을 결정하여 지원 * 지원사항 별도 문의 |
| 장년· 고령자 고용 장려금 |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| · 정년 미설정 사업장에서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지원 기준율(1~23%)을 초과하여 고용 [지원수준] 기준고용률 초과 인원 1인당 분기별 30만원을 근로자수의 20%까지. 다만, 일지리안정자금 지원대상 근로자는 지원기준을 산정 시 제외 |
| |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 | · 정년제도를 운영하는 중소·중견기업 중 정년 도달 근로자에 대해 고용연장을 위해 정년연장, 정년폐지, 재고용하는 사업주 [지원수준] 정년 이후 계속 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30만원(분기별 신청), 최대 2년간 지원 |